##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6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이병진・박지원・조 국

송옥주 • 윤후덕 • 임호선

한정애 • 이상식 • 한민수

안규백 • 이기헌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

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·사회·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·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.

현재 통일부・법무부・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.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'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'를 통해 "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

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"하 다고 밝힌 바 있음.

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다.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함(안 제3조).
- 라.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,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·자료수집·연구 및 간행 등으로 함(안 제6조).
- 마.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

있는 때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 제7조).

바.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9조).

#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중장기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법 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운영원칙)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통일부, 법무부, 법제 처 등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(이하 "통일 법제"라 한다)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통일법제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조(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통일법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 -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위으로 구성한다.
  - ③ 기획단장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며, 부단장은 기획단원 중에서 기획단장이 지명한다.
  - ④ 기획단원은 통일법제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

-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기획단장) ① 기획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, 기획단의 회의를 주재하며,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.
  - ②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장이 기획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단원의 임기)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소관 사무) 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  - 1.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
  - 2.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·자료수집·연구 및 간행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7조(회의) ① 기획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  - ② 기획단의 회의는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기획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단원 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- ④ 그 밖에 기획단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수당 등) 기획단의 민간단원과 기획단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및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보고서의 제출) 기획단은 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기획단 운영규정)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